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김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일자 : 2019년 5월 일
발 의 자 : 김영래, 배재만, 김성우, 도희재, 전수곤, 황숙희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4. 3.24.)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자·출연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제 1항제6호)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지방공기업법」제77조의3는 2014. 3. 24.일 삭제됨.

나.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「성주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」을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으로 개정(안 제17조④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나. 기 타 : 조례안예고(2019. 5. 8 ~ 2019. 5. 17)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, 출연법인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”으로 한다.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제17조제4항 중 “「성주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」”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대상기관) ①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,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・회계・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	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・출연 기관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대상사무) ① (생 략)	제6조(대상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.	<삭 제>
제17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	제17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성주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」에 따른다.	④ ----------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----------.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